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 번호	1306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되어 2004. 7. 29일부터 시행되고 동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과 중복되는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 폐지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5. 1. 7. ~ 2005. 1. 26.(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윤 은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료관담당 류 기 장
	담 당 자 성명·전화	서 영 주 (행정 2118)

□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 행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책임행정 실현으로 시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시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디스크,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 관리하고 있는 행정에 관련한 자료 등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4. "청구인"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자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행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니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 보관할 수 있는 행정정보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행정정보를 그 청구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청구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2.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

제6조 (공개대상정보)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 규정이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한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범죄의 예방·수사·소추·형의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4. 인적·신분·종교·재산·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생명·신체·자유·건강 등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6. 법인이나 사업자등의 영업 또는 과학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7.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기관·단체 등)로 부터 취득한 정보
8. 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의사 결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9.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10. 기타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 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

②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일부 집행사항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청구방법)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주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된 행정 정보는 구두 청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2.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3. 해당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사용목적

제8조 (행정정보 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사본 또는 그의 교부로 행한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오손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청구비용의 부담) ①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단, 위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소요비용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공개내용이 공공복리 목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공개의 가부결정) ①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8근무시간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장소, 공개 방법 및 수수료 금액, 납부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안산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공개의 가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심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 결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로부터 결정사항을 이송받은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과 학계 등 관련전문가 2인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의 가부결정
2. 공개가능여부 심의 및 자분
3. 행정정보의 공개운영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누설금지의무)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에서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공개대상목록의 작성 등)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 목록책자를 발간하여 본청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외규정) 이 조례는 다른 관계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1992년 이후 생산, 수집된 정보는 1994년 9월 1일부터 1991년이전 생산수집된 정보는 당해 정보목록이 작성된 때부터 공개한다. 다만, 1991년이전 정보로서 이미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 정보나 목록이 작성되지 않는 정보라도 당해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공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